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(등록)을 위한 운영지침

㈜ 오 리 온

제 1 조 [목적]

이 운영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'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(등록)을 위한 실천사항'을 준용하여 주식회사 오리온(이하 "당사")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[용어의 정의]

- 1. "협력업체"라 함은 원사업자의 제조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 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 자도 포함한다.
- 2. "협력업체 풀(Pool)"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·운 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.
- 3. "협력업체 선정"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4. "협력업체 운용"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·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 시 기회 부여,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 한다.

제 3 조 [협력업체 선정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]

- 1.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 일전 또는 등록(갱신등록 포함)심사 개시 30 일전에 사업장, 전자매체(웹사이트) 등에 15 일이상 공개한다.
- 2.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 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, 이하 같음)으로 개별 통지한다.
- 3.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, 미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.

제 4 조 [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]

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 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[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]

1.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으며, 아래와 같은 세부 선정기준 별 반영 비중을 적절히 배분한다.

-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
-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
-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
-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등
- 2.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.
- 3.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.
- 4.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.
- 5. 협력업체로 선정·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.

제 6 조 [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]

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,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.

제 7 조 [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]

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8 조 [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]

- 1.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기 준 및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.
 -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부도, 휴업,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
 -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 -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
 - 당사 평가기준에 따른 불량업체에 해당하는 경우
- 2.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,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,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.

제 9 조 [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한 제재]

당사는 당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한다.

부 칙

제 1 조 [시행일]

이 운영기준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[시행일]

이 운영기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